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06
----------	-----

제출일자 : 2013. 5. 15.
제출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에 따른 정원증원,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기구개편에 따른 농업정책과 본청 이관 등 군정의 내실있는 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으로 조직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총 정원 754명 (증30) (안 제2조)

- 1) 집행기관 : 742명 (증30)
 - 일반직 증33명 (4급+1, 5급+1, 6급+8, 7급+8, 8급+10, 9급+5)
 - 지도직 증 2명 (농촌지도관+1, 농촌지도사+1)
 - 기능직 감 5명 (6급+2, 7급△3, 9급△4)
- 2) 의회 : 12명(변동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함(안 제4조)

- 1) 본 청 : 416 ⇨ 458명 (증42)
- 2) 직속기관 : 100 ⇨ 85명 (감15)
- 3) 사업소 : 13명 (변동없음)
- 4) 의회사무과 : 12명 (변동없음)
- 5) 읍 및 그 출장소 : 86 ⇨ 89명 (증3)
- 6) 면 : 97명 (변동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관련 부서와 협의 완료

다. 함 의 : 행정지원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4. 16. ~ 5. 6.
 - (나) 예고결과 : 의견있음(붙임 의견서 참고)
-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문 중“724”를 “754”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12”를 “742”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1 】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3%이상	6% 이내	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별 표 2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0% 이내	25% 이내	10%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0%이내	23%이내	37%이내	30%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100%	-	-	-

비 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별 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754	458	12	85	13	89	97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83	435	8	57	9	86	88
3급	1	1					
4급	5	4		1			
5급	37	23	3	1	1	3	6
6급이하 계	640	407	5	55	8	83	82
연구직 계	2	2					
연 구 관							
연 구 사	2	2					
지도직 계	24			24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2			22			
별정직 계	2	1		1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2	1		1			
기능직 계	42	19	4	3	4	3	9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 : 30명 증원
 - 일반직 증33명 (4급+1, 5급+1, 6급+8, 7급+8, 8급+10, 9급+5)
 - 지도직 증 2명 (농촌지도관+1, 농촌지도사+1)
 - 기능직 감 5명 (6급+2, 7급 △3, 9급 △4)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계	1,854,057	
인건비	1,455,211	
연봉	73,000	■ 4급 = 73,000,000원
기본급	904,715	■ 5급(30호봉) : 3,849,500원 * 2명 * 12개월 = 92,388,000원 ■ 6급(26호봉) : 3,244,400원 * 11명 * 12개월 = 428,260,800원 ■ 7급(16호봉) : 2,522,300원 * 5명 * 12개월 = 151,338,000원 ■ 8급(8호봉) : 1,797,100원 * 10명 * 12개월 = 215,652,000원 ■ 9급(5호봉) : 1,423,000원 * 1명 * 12개월 = 17,076,000원
정근수당	67,854	■ 904,714,800원 * 90% / 12월 = 67,853,610원
초과근무 수당	90,203	■ 5급 : 11,002원 * 2인 * 30시간 * 12월 = 7,921,440원 ■ 6급 : 9,383원 * 11인 * 30시간 * 12월 = 37,156,680원 ■ 7급 : 8,476원 * 5인 * 30시간 * 12월 = 15,256,800원 ■ 8급 : 7,609원 * 10인 * 30시간 * 12월 = 27,392,400원 ■ 9급 : 6,878원 * 1인 * 30시간 * 12월 = 2,476,080원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정근수당 가산금	31,080	■ 25년 이상 130,000원 * 13인 * 12월 = 20,280,000원 ■ 15년 이상 80,000원 * 5인 * 12월 = 4,800,000원 ■ 5년 이상 50,000원 * 10인 * 12월 = 6,000,000원
정액급식비	46,800	■ 기준액 130,000원 * 30인 * 12월 = 46,800,000원
명절휴가비	90,471	■ 904,714,800원 * 120% / 12 = 90,471,480원
가계지원비	151,087	■ 904,714,800원 * 16.7% = 151,087,372원
물건비	71,605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335	■ 기준액 (301~600명까지) 45,000원 * 27인 = 1,215,000원 ■ 기준액 (100명까지) 40,000원 * 3인 = 120,000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550	■ 4급 : 350,000원 * 1인 = 350,000원 ■ 5급 : 100,000원 * 2인 = 200,000원
직급 보조비	53,520	■ 4급 : 400,000원 * 1인 * 12월 = 4,800,000원 ■ 5급 : 250,000원 * 2인 * 12월 = 6,000,000원 ■ 6급 : 155,000원 * 11인 * 12월 = 20,460,000원 ■ 7급 : 140,000원 * 5인 * 12월 = 8,400,000원 ■ 8~9급 : 105,000원 * 11인 * 12월 = 13,860,000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6,200	■ 50,000원 * 27인 * 12월 = 16,200,000원
이전경비	327,242	
성과 상여금	95,208	■ 5급 : 3,375,100원 * 2인 * 130% = 8,775,260원 ■ 6급 : 2,901,600원 * 11인 * 130% = 41,492,880원 ■ 7급 : 2,466,800원 * 5인 * 130% = 16,034,200원 ■ 8급 : 2,049,300원 * 10인 * 130% = 26,640,900원 ■ 9급 : 1,742,500원 * 1인 * 130% = 2,265,250원
연금 부담금	123,693	■ 1,455,210,662원 * 8.5% = 123,692,906원
국민건강 보험금	38,781	■ 1,455,210,662원 * 2.665% = 38,781,364원
노인장기 요양보험금	69,559	■ 1,455,210,662원 * 4.78% = 69,559,070원

[붙임]

입법예고결과 검토의견서

예 고 안	제출자 및 의견	주관부서 검토의견
정원조례 【별표 3】 직급별 정원표	○ 안전행정부 지침 - 민원전담부서 설치 ○ 농촌지도과 - 직렬 단수 조정 요청 (농업+농촌지도관 → 농촌지도관)	○ 종합민원과 존치 - 본청 일반직 5급 정원 조정 22 → 23명(증1) - 본청 일반직 6급이하 408 → 407명(감1) ○ 직속기관 직렬조정 - 일반직 5급 2 → 1명(감1) - 지도직 지도관 1 → 2명(증1)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안전행정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다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